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46호 2009. 6. 10.

공 고

제 2009-459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
제 2009-460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4
제 2009-461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5
제 2009-46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6
제 2009-463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7
제 2009-464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8
제 2009-465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9
제 2009-466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0
제 2009-467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1
제 2009-468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2
제 2009-469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3
제 2009-470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4
제 2009-471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5
제 2009-47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6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459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가. 제정이유

중랑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안의 내용(안 제4조)

-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행정의 능률화 방안
- 구 세입증대, 예산절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제안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안 제6조)

○ 제안의 제출방법은 특정한 서식없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안 제7조)

○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설치가능(안 제8조)

○ 구성(안 제9조)

- 제안심사위원회 : 10명 이내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중랑구의회 의원 1명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실무회의 : 기획홍보과장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10명 이내
-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안 제11조)
- 공무원을 제외한 출석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안 제12조)
- 제안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 가능(안 제16조)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실무회의 상정 제안제출자에게는 격려(기념)품 지급(안 제17조)

II.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490-3320)

2009년 6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중랑구 상징물과 구기의 제작,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징물의 종류 : 휘장, 캐릭터, 꽃, 나무, 새, 노래(안 제3조)
-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안 제4조)
- 구청장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안 제6조)
 -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 내지 (다)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 가능
- 상징물의 사용제한(안 제7조)
 -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490-3320)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우(안 제4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 예산지원(안 제5조)

-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사업(안 제6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함(☎490-3325)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의원 정수는 동별로 하고, 인구 30,000명 이상인 동은 3명으로 함(안 제3조)
- 구청장은 제도의 필요성, 사명감과 역할,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 교육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6조, 안 제7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490-3358)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정이유

긴급지원의 연장결정·적정성 심사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결정 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안 제3조)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 소집(안 제8조)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490-3358)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4조)

-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
-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계재
-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원내용(안 제5조)

-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유지비의 지원
-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예산 지원
-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 설, 보훈의 달,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490-3359)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일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랑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안 제4조)
 -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중랑 가이드라인」 준수
-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제3호)
 -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중랑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함.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중랑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 부위원장 1명을 공동부위원장 2명으로(도시환경국장, 민간위원)으로 확대
- 소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를 5명 이상으로 명시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블라드 등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 포함(안 [별표])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함(☎490-3841)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빈곤·위기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적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안 제7조)
-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임기 2년 (안 제8조)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안 제9조)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490-3493)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개인에 대한 표창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표창대상을 정함(안 제2조)
 -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표창
- 표창자 결정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시민 공적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표창대상자 추천방법을 정함(안 제7조)
 - 담당관·과장 및 동장, 사회단체장 및 장애인단체 등이 추천
- 표창수상자 예우방안을 정함(안 제9조)
 - 표창수상자에 대해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구정참여 기회 제공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비치함(☎490-3833)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가.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용하는 민원인 및 구청에 근무하는 상근인력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
-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비치함(☎490-3310)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세부임무수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예규, 동 운영내규의 명문화를 통하여 민·관·군 통합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삭제(안 제1조, 안 제12조)
- 「민방위기본법」 근거 조항의 변경(안 제9조제2호)
- 통합방위예규 및 동 운영내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제5항)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비치함(전화 : 490-3310)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가. 제정이유

구민에게 양질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가능(안 제9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490-3492)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2006. 10. 4.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과 2006. 12. 29.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하고, 단서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개정(안 제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개정(안 제13조제1항)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수방재과에 비치함(☎490-3420)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안 제4조제2항)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수방재과에 비치함(☎490-3420)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